

의안 번호	제2632호~제2634호
----------	---------------

2025. 7. 23.(수) 11:00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안 건
총 3건 : 붙임 참조 (개정조례안 2, 계획안 1)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총괄

I 심사대상 안건

- 의안번호 제2632호 : 장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2633호 : 장성군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의안번호 제2634호 : 장성군 보건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II 심사경과

의안번호	제출일	제출자 (발의자)	회부일	상정일
제2632호	2025. 7. 9.	장성군수 (관광과)	2025. 7. 10.	2025. 7. 22.
제2633호	2025. 7. 9.	장성군수 (세무회계과)	2025. 7. 10.	2025. 7. 22.
제2634호	2025. 7. 9.	장성군수 (보건소)	2025. 7. 10.	2025. 7. 22.

III 심사결과

안건	심사결과
장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장성군 보건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5. 7. 9.
- 제출자 : 장성군수(관광과)
- 회부일자 : 2025. 7. 10.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7. 22.(제370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 축제위원회 외 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축제가 증가함에 따라 축제위원회에 한정된 조례를 확장하여 장성군 축제 발전을 도모하고,
-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안전관리, 사후평가 등)을 반영, 정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현행) 장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개정) 장성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6조제4항)
 - (당연직) 황룡강사업소장 추가 / (위촉직) 안전전문가 추가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조치 의무규정 신설 (안 제15조)
- 축제 이벤트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 규정 신설(안 제16조)
- 축제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제도 및 공개제도 신설(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전부개정안은 축제위원회 외 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축제가 증가함에 따라 축제위원회에 한정된 조례를 확장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인 안전관리, 사후관리 등을 반영, 정비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5. 7. 9.
- 제출자 : 장성군수(세무회계과)
- 회부일자 : 2025. 7. 10.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7. 22.(제370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3항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법정 사항으로,
-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 : 취득 1건(건물)

유형	사업명	소재지	면적 (㎡)	재산가액 (천원)	비고
계	1개 사업		1,000	5,200,000	
건물	장성군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장성읍 영천리 1668-27 외 1필지	1,000	5,200,000	

- 공유재산 관리계획

구분		필지수 / 동수	면적 (㎡)	재산가액 (천원)	비고
계		1동	1,000	5,200,000	
취득	건물신축	1동	1,000	5,200,0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3항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5. 7. 9.
- 제출자 : 장성군수(보건소)
- 회부일자 : 2025. 7. 10.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7. 22.(제370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총리령 제1916호, 시행 2024. 11. 23.)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위임사항 명시(안 제1조)
 - 수수료 징수 근거 변경(안 제4조제1항)
 - 증명발급 수수료 구체화 신설(안 제4조제3항)
 - 증명수수료 [별표 2]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증명수수료를 개정하여 법률의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